

공제항목 요약 (15년 변경사항 파란색으로 표시)

항목	구분		한도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배우자	O	O
				직계존속	O	만60세이상
				형제자매	O	만20세이하 만60세이상
				직계비속	O	만20세이하
				위탁아동	O	만18세미만
				수급자 등	O	X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료 등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및 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특별 소득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 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3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 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항목	구분		한도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15.1.1. 이후 차입분 연 1800만원(만기15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만기10년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 + ② +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가입자 중 초과자는 2017년까지 연 납입액120만원 이하로 적용)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20%(2012년), 30%(2013년), 50%·30%(2014년) 100%·50%·30% (2015년) : 벤처조합·벤처기업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table><tr><th>구분</th><th>공제한도</th></tr><tr><td>'13년 이전 투자</td><td>소득금액의 40%</td></tr><tr><td>'14년 이후 투자</td><td>소득금액의 50%</td></tr></table>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40%,50%)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항목	구분	한도	요건
			·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40% 공제대상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 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50% 공제대상 : '15년 하반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연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로 전환	근로소득금액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 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500만원 한도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15.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복무 후 동 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 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 (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인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14.1.1. ~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항목	구분		한도	요건	
			(5년)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 (66만원, 74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세액공제		1명당 세액공제액 2명 이하 15만원 3명 이상 3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 세액공제 <신설>		1명당 연30만원	'14.1.1. 이후 출생 입양신고부터 1명당 연30만원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연금저축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 12% (15%)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14.1.1.이후 납입분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율 15% 적용	
		퇴직연금	퇴직연금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 12%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14.1.1.이후 납입분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율 15% 적용	
	특별 세액 공제 특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15%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항목	구분		한도	요건		
별 세 액 공 제	료 비	㉔ 65세 이상 ㉕ 장애인 ㉖ 그 외 부양가족	× 15% * 공제대상금액 (연 700만원 한도) 한도제외 대상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 술비	- 공제 가능 의료비 ·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 ·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㉔ < 총급여액 3%	(㉔+㉕+㉖) - (총급여액 3% - ㉔)	
				㉔ >= 총급여액 3%	(㉔+㉕+㉖) + 적은금액[(㉔-총 급여액 3%), 700만원]	
				※㉔, ㉕, ㉖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한도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 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 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 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본인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 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 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장애인 특수교 육비				
	기 부 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 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항목	구분			한도	요건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 3천만원 이하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 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